

불임 3

디딤돌(첫걸음_여성참여활성화 R&D) 세부 지원내용

1. 세부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등의 여성친화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견인

□ 지원내용

- 여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화 기회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유도

□ 지원규모 : 총 50억 원, 50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자유공모

* 기술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 포함 시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①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 ②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 ③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중소기업
 - ④ 여성참여활성화 R&D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여성참여활성화 R&D 지원자격 >

-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
- ②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여성이 종사 중인 기업(경력단절 여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 관련 증빙 필수 확인)
- ③ (여성연구자 중심) 과제 참여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p>① 자격요건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p> <p>② 업력 산정기준은 '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적용</p> <p>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p> <p>* 단, 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기업이 과제 신청·접수 시, 신산업 창업분야를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내용이 신산업 창업분야와 상이할 경우 예외 적용 제외</p> <p>④ R&D 첫 수행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설립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협약체결 이력이 없는 기업</p> <p>*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1단계(사전연구) 과제는 수행 이력에서 예외 적용</p>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6개월, 최대 2억 원 이내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1년 6개월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 1차년도는 과제 연구개발시작일(2026.4.1.)로부터 2026.12.31.까지로 설정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참여활성화 R&D 기술개발기간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여성참여활성화 R&D	'26.4.1~'26.12.31(9개월)	'27.1.1~'27.9.30(9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조정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예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참여활성화 R&D 연구개발비 >

(단위: 천원)

구 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00,000	3,400	30,000	33,400	133,400
2차년도	100,000	3,400	30,000	33,400	133,400
합 계	200,000	6,800	60,000	66,800	266,800
연구개발비 비중	75%	2.5%	22.5%	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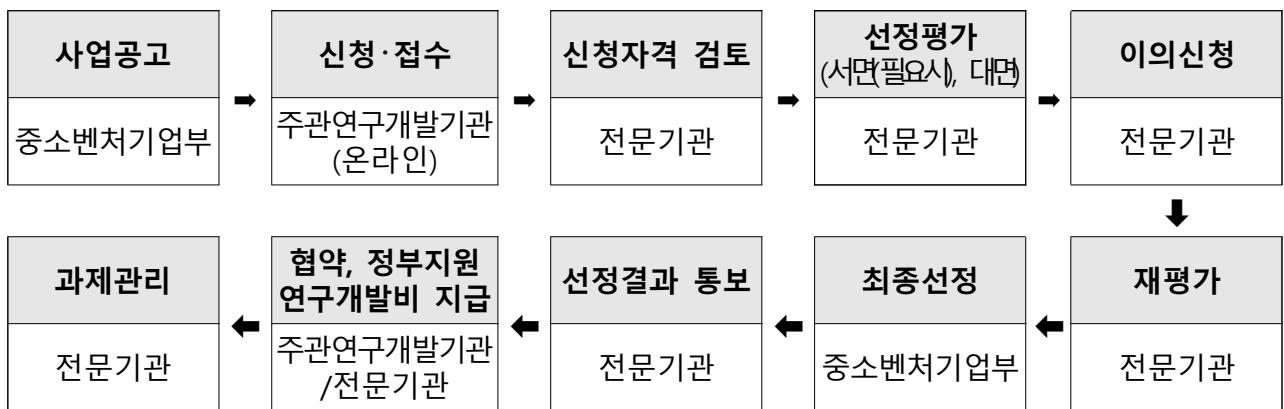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현금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 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 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실운영비)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별첨 작성양식 참조)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 *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유지기기 관련 비용(사무용품은 제외)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자격 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 1-1] 참고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text{종합평점} = \frac{\text{서면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서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안)】

구분	평가요소	배점
기술성 (40)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15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5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10
사업성 (20)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기술개발역량 (20)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15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5
파급효과 (15)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자금집행계획(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선정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1> 확인

【대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안)】

구분	평가요소	배점
기술성 (30)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15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20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사업성 (30)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15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5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R&D과제와의 차별성	10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25)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15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10
자금집행계획(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 이의신청 평가 후 하위 10% 과제 및 이의신청 '可' 판정 과제를 재평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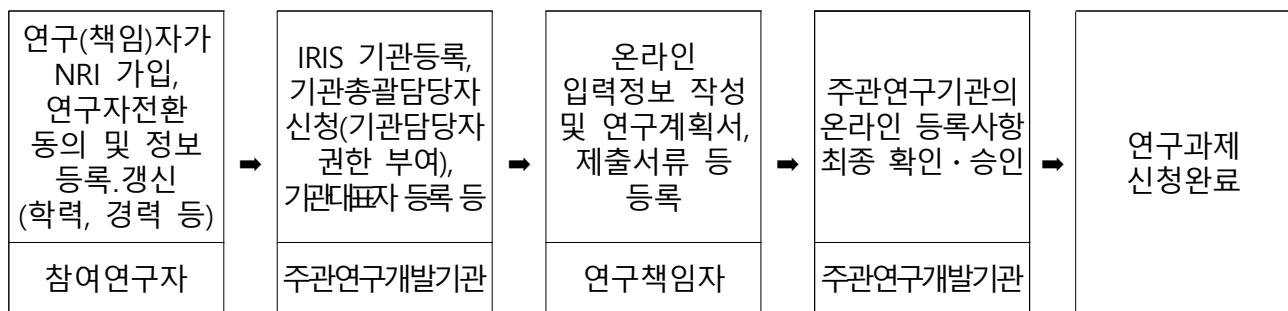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6년 1월 6일(화) ~ 1월 23일(금), 18:00까지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 계획서 신청 · 접수



□ 제출서류

- ☞ 모든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4. 1로 기재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불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본문1	○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2	○
②	여성참여활성화 R&D 지원자격 서류 1)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2)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최근 3년 이내('23.1.22.~'26.1.23.) 채용된 경력단절 여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여성연구자 중심) 주관연구개발기관 4대보험 가입증명원(참여연구원 여성 비율 50% 이상)		○
③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25.10.22. 이후 발급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④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⑥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⑦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⑧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⑨	가점 및 우대사항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4.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fqd

참고 1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 · 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공통 가점 중 성과 창출 강화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①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상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상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지역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2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차증

*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시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 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단,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동 지표 활용 여부 및 점수배점은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가점 >

연번	가점 사항	가점	확인
①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 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②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④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⑥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 환경부의 대체품 생산업체 현황 조사 시 서약서를 제출한 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⑦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점	상장사본 확인
⑧	K-뷰티 관련 제조기술 보유기업 * (기능성 원료)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모발 색상변화 및 영양공급 등 ** (친환경 부자재) 화장품용 친환경 부자재(폐플라스틱 재활용, 생분해용기개발,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	1점	세부 지원분야 부합성 검토 제출 양식 확인 <참고2> 참조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참고 2

K-뷰티 가점 신청분야 부합성 검토 제출 양식(해당시)

* K-뷰티 가점 신청 시 지원분야 부합성 검토를 위한 상세 내용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지원분야

분야	주요내용
택1	기능성 원료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염색, 모발 및 두피 건강 케어 등 기능성 화장품의 용도별 기술개발
	친환경 부자재 폐플라스틱, 생분해용기,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을 활용한 화장품용 친환경 부자재 기술개발

* 선택한 지원 분야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떠한 부분에서 부합되는지 설명

-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내용과 지원 분야의 부합성 위주로 작성
- “친환경 부자재”분야의 경우, ‘K-뷰티’와의 관련성 및 근거자료(기술개발의뢰서 등) 첨부 필수